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 5. 7.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4월 28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5년 5월 4일
- 다. 상정일자 : 제196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15년 5월 7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투자심사 정의 규정(안 제2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의 투자사업에 대해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2)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안 제3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 공무원 :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도시환경국장
- 민간위원 :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

3)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규정 마련(안 제4조)

-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해당위원 참여 배제

4)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간사와 서기를 정함(안 제5조 및 제7조)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부득이한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 수행 곤란 시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
- 간사 : 기획예산과장, 서기 : 예산팀장

5) 위원회 운영 및 자료제출·설명요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8조)

- 투자심사 기능보완을 위해 분야별 사전심사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음
-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현지 방문하거나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가능

6)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안 제9조)

3.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은모)

- 동(同) 조례안은 당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마포구 재정 투융자 심사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던 것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투자심사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10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의 투자 사업에 대해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투자심사 정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구성과,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은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도시환경국장 으로 민간위원은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로,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음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해당위원 참여를 배제하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내용을 안 제7조에는 간사와 서기의 내용을 명시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와 위원회의 투자심사 기능 보완을 위해 분야별 사전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와 관련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현지 방문하거나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가 가능하도록 명시함

안 제9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 제2조에서는 동(同) 조례 시행 전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간주하였음.

- 검토의견으로는 동(同)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저촉됨이 없고, 2015.3.12.~ 4.1. 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으며 그 동안 정비되지 않은 부정확한 용어 및 문구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음.
- 또한 동(同)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의 투자 사업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투자심사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을 공무원에서 제외하고 공무원 위원 수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3명)인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도시환경국장으로 명확하게 하였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는 제외하고 민간전문가와 대학교수로 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였으며, 투자심사 기능보완을 위해 분야별 사전 심사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등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서기는 예산팀장이 맡도록 하였고, 업무수행을 위해 현지 방문하거나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동(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기능이 유사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까지 규정을 적용하였고, 또한 상위법에 따라 동(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한층 더 강화된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특히 예산심의, 결산 및 투자 심사, 지방보조금 및 지방장기재정계획 심의 시 필요한 해당분야 전문가가 골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 밖에 동(同) 조례 제정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